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수신 서울특별시장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요청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서측))

이문서는 전자문서함 유통문서입니다.

붙임의 공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관인생략

대리 최소영 실장 이진솔 센터장 06/18
백종근

협조자

시행 BF일2019-568 (2019.06.18.) 접수 건축부-10250 (2019.6.18.)
우 05836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 / <http://www.kriea.re.kr>
동 907-912호
전화 02-6287-0886 / 전송 02-558-8124 / bfkriea@kriea.re.kr / 부분공개(5)

문서번호 : KRIA-BF일-2019-568호

작성일자 : 2019. 06. 18.

수신처 : 서울특별시장

참조 : 건축부장

제 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요청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서측))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KRIA-BF일-2019-496 (2019. 05.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심사단 심사회의 개최 알림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서측))
3. 위 근거와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신청 건축물인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사업(서측)”의 심사결과를 불임과 같이 첨부하오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조치계획을 요청합니다.

첨부 :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서측) 심사결과서 1부. 끝.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사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본인증 심사단 심사결과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서측))**

2019. 06. 05.



■ 본인증 심사

- 심 사 일 : 2019년 06월 05일 (수)
- 심 사 단 : 3명
- 인증 기관 : 1명

* 실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 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1. 매개시설 |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 까지 보행로 | <p>1. 접근로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공사 미완료 부분이 많아 평가가 불가능함, 추후 공사 완료 또는 명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도면 제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함</p> <p>2. 대지경계선에서의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로와의 교차부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구간 양측 진행방향으로 점형블록 설치 할 것 - 보행구간은 1.5m 이상 확보하여 설치 할 것 <p>3. 광장진입을 위한 승강기, 계단 및 전반적인 접근을 위한 구간 포장이 미완료되어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시 바랍니다.</p> |      |
| | 1.1.2 유효폭 | <p>1. 지상2층 대지경계선측의 자전거 보관소의 경우, 자전거 보관대의 후면부분에는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등의 이동을 고려하여 유효폭 1.2m 이상의 보행로 폭을 확보하기 바랍니다.</p> <p>2. 현재, 지상2층(노들계단측) 외부보행로의 경우, 시공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보행로 유효폭 등의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시공완료되는 즉시, 관련첨부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p> |   |
| | 1.1.3 단차 | <p>1. 지상2층에 설치하는 외부 브릿지(동측과 서측 연결 외부 브릿지)를 연결하는 철골계단(외부계단-3) 계단참부분과 보행로 접점부위는 계단바닥마감(석재마감) 설치시, 보행로와의 단차 제거하기 바랍니다.</p> <p>2. 지상2층 한강대교측 대로변에 설치된 외부 스탠드 사이의 조경구간에 대한 설치방식, 후면 및 측면 스탠드와의 단차여부 등을 확인가능하도록, 조경완료 즉시 인증기관에 사진 등의 첨부자료를 송부하여 적합여부를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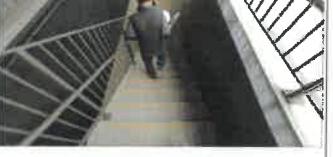
| 범주 | 평가항목 | 실사단 의견 | 비고 |
|----|------------|--|---|
| | | <p>3. 지상2층 외부 브릿지(동측과 서측 연결 외부 브릿지)를 연결하는 철골계단(외부계단-3)에서 공연장 접근을 위한 외부경사로의 양측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에서 800-900 높이 / 지름 32-38 / 시작과 끝 지점에는 점자표지 부착 <p>4. 2층 공연장 외부 경사로 진입부의 단차처리에 대한 내용 제시</p> <p>5. 공연장측 지상3층 방풍실(T302) 외부의 외부 연결로와 방풍실 출입문 전후면의 단차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연장 3층으로 이어지는 외부 연결로(데크)는 시공중인 관계로 단차여부 확인 불가한 상태임. 시공완료 즉시 인증기관에 첨부자료를 송부하여 적합여부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1.1.4 기울기 | <p>1. 현재, 한강대교측 대로변에 설치하는 지상2층의 외부 스텐드 전면의 보행로는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로써, 그 기울기 및 횡경사 등의 평가가 어렵습니다.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시공완료 즉시 인증기관에 관련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합여부를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의 끝단에서 단차 없이 마감하여 횡경사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할 것 (예비인증시 1/24구간으로 포장에 주의 할 것) |   |
| | 1.1.5 바닥마감 | <p>1. 지상2층 공연장 외부의 바닥마감재의 경우, 사고석으로 된 라인형태의 바닥마감이 있습니다. 사고석 은표면을 다듬어 요철이 느껴지지 않도록 변경, 사이의 틈새부분은 몰탈로 채워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p> <p>2. 건물 주변에 전체적으로 설치된 줄무늬 형태의 바닥마감재는 벽면과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안전구역을 표시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계단의 점형블록과 연결, 출입구 전면에 설치 또는 통로에 설치되는 경우 유도블록으로 오인하여 방향안내에 혼란을 줄 수 있음, 출입구간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출입을 금지하는 장애물 존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등, 모든 출입구 전면의 보도블록은 요철이 없는 형태의 보도블록으로 설치 바랍니다.</p> <p>설치 위치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설치된 줄무늬 마감재는 모두 제거바랍니다.</p> <p>3. 지상2층의 외부계단-4측 시작지점의 바닥은 콩자갈로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덮개의 격자구멍 간격이 양방향 2cm 이하의 형태로 설치된 배수구 덮개로 변경하여 설치바랍니다.</p> |     |

| 범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 1.1.6 보행장애물 | <p>1. 대지내 보행로상에 설치된 소방 관련 설비가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또는 주변에 난간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p> <p>2. 남쪽 승강기 2층 광장 진입부분의 기둥이 양쪽의 계단 사이에서 보행장애물을 작용함, 양쪽 계단의 손잡이를 기둥 주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하부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p> <p>3. 2층 광장으로 진입하는 계단상에 불규칙하게 설치된 조경부분과 계단 사이의 마감에 대한 상세내용 제시 – 추락방지 난간 설치, 안전조치, 조경내 벤치 설치 등 종합적 내용 제시</p> <p>4. 동,서 건물 연결통로 아래에 설치된 기둥의 하부처리 및 계단부분 하부 처리에 대한 내용 제시</p> <p>5. 대지 북쪽 진입로상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설치시 진입로의 유효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현재 파고라 위치 기준으로 설치시 유효폭 확보가 어려움</p> <p>6. 연결통로 계단 기둥(2층)에 대한 하부 및 기둥면 처리에 대한 내용 제시 (색상처리 및 안전조치 필요)</p> <p>7. 상업업무시설A 벽면에 돌출된 사다리는 어린이 등이 매달리거나 오르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덮개 등을 설치할 것</p> <p>8. 상업업무시설(공통) 독립기둥 하부처리는 색상으로는 구분되나 동일할 재질을 사용하고 있음 – 구분되는 재질로 변경 필요</p> <p>9. 또한 현재의 독립기둥은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테리어 공사후 상황에서 보행장애물 여부가 판단 가능함, 인테리어 계획에 대한 내용 제시 필요</p> |  <p>[보행로상의 소방설비]</p>  <p>[2층 남쪽 승강기, 계단 전면 기종]</p>  <p>[2층 광장 진입계단 조경]</p>  <p>[2층 진입 계단상의 조경부분 마감상태]</p>  <p>[연결 통로 계단 하부와 독립기둥]</p>  <p>[북쪽 진입로 자전거 거치대]</p> |

| 범 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 |  <p>[연결통로 계단 기둥, 2층]</p> | |
| | |  <p>[3층 상업업무시설A 벽면 사다리]</p> | |
| 1.1.7 덮개 | |  <p>[상업업무시설내 독립기둥 하부처리]</p> | <p>1. 보행로 상에 설치하는 모든 배수구 덮개의 격자구멍 간격은 양방향 2cm 이하로 설치바랍니다.</p>  |

| 범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 | | |
|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p>1.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한 주차구역 전체의 바닥마감(아스콘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닥마감 완료시 보행로와의 단차를 제거하여, 단차없이 주출입구로 접근가능하도록 하기 바랍니다.</p> <p>- 주차구역 바닥마감 시공완료 시, 첨부자료 등을 인증 기관에 송부하여 적합여부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심의시 평가 요함)</p> |   |
| | 1.2.2 주차면수 확보 | | |
| | 1.2.3 주차구역 크기 | <p>1.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주차구역 크기 확인이 불가합니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크기로 설치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완료시, 주차구역 크기 관련 증빙자료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여 적합여부 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p> | |
| | 1.2.4 보행 안전통로 | | |
| |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p>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전면에 설치된 입식안내표지판(계도문)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시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바랍니다.</p> <p>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각 2개 구역씩, 2개소로 분산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의 차량 주출입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유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바랍니다.</p> <p>-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경 구간 등에 설치 요망</p> | |
| 1.3 주출입구 (문) | 1.3.1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 | |
| | 1.3.2 주출입문의 형태 | | |
| | 1.3.3 유효폭 | | |
| | 1.3.4 단차 | | |
| | 1.3.5 전면유효거리 | <p>1. 일부 방풍실의 경우, 방풍실내의 전면유효거리(1.2m 이상)가 부족합니다. 출입문의 손잡이측에 '미시오', '당기시오' 표지판을 부착하여 외부 출입문의 경우, 외부측으로 개방되도록 하기 바랍니다.</p> | |
| | 1.3.6 손잡이 | | |

| 범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 1.3.7 경고블록 | <p>1. 근린생활시설 출입문 측면의 1.5m 높이에는 실명안내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며, 전면 30cm 지점의 바닥에는 점형블록을 2장 설치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2층 균생(상업업무시설 B2(B209)) 출입문 / 균생(상업업무시설 B1(B207)) 출입문 등 - 외부 화장실 접근 구간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하고 바닥 점자 2개소 설치 할 것 <p>2. 현재, 지상2층 복도-B / 계단실-B 접근을 위한 방풍 실 출입문의 경우, 출입문의 외부측 바닥에만 점형블록이 출입문폭만큼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내부에도 출입문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바랍니다.</p> <p>3. 3층 연결 브릿지로 출입하는 문은 통과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풍실 전후의 문의 성격이 다를 경우 각문의 앞뒤에 점형블록 설치 할 것 |     |
| 2. 내부 시설 | 2.1 일반 출입문 | 2.1.1 단차 2.1.2 유효폭 2.1.3 전후면 유효거리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p>1. 실명안내점자표지판 종, 촉지도식 평면도에서의 '현위치' 수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실제, 내부평면에 대응하여 촉지도식 평면도의 '현위치'를 수정하거나, 촉지도식 평면도의 현위치에 맞춰 촉지도식 평면도의 위치를 변경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1층 상업업무시설 B(B101) 주출입구(방풍실 B(B102)) 측면의 촉지도식 평면도 |
| | 2.2 복도 | 2.2.1 유효폭 2.2.2 단차 2.2.3 바닥마감 2.2.4 보행장애물 2.2.5 연속손잡이 | <p>1. 연결통로, 3층 공연장에서 승강기까지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경사에 대한 내용 제시, 경사로 구간에 손잡이 설치에 대한 내용 제시</p> <p>2. 연결통로 계단, 승강기입구, 경사발생구간에 대한 종합적 내용 제시, 계단처리부분, 승강기 전면 경사발생여부, 경사로와 참의 연결부 등의 내용 필요 (계단 설치 시 점자를록 설치위치 포함)</p> |
| | 2.3 계단 | 2.3.1 형태 및 유효폭 | <p>1. 주출입문, 일반출입문, 복도 등의 투명유리 부분에는 바닥에서 1.2-15m 높이에는 명확히 인지가능한 색상의 띠지를 부착하여 보행자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바랍니다.</p> <p>2. 실내, 이동가능한 계단측의 상부와 하부(시작과 끝지점)에만 계단폭만큼 점형블록 설치</p> |

| 범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가능한 계단의 측면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p>2. 연결통로 계단 마감, 손잡이 설치, 최상부 바닥면과의 단차처리 등에 대한 상세 내용 제시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에 맞는 손잡이 설치 와 마감재 설치 할 것 - 계단코 및 이색관련하여 조치 할 것 - 계단 브릿지와 연계되는 계단의 단은 철면의 높이 동일하게 맞도록 조치 할 것 <p>3. 공연장 실내계단 중, 계단 한쪽에만 설치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의 양측에 손잡이 설치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손잡이 사이의 유효폭 1.2M 이상 확보 바람 <p>4. 멀티 스튜디오 계단의 유효폭이 기준에 맞지 않음, 재 확인 필요, 상세처수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손잡이 사이의 유효폭 1.2M 이상 확보 바람 |  <p>[2층공연장외부계단]</p>    <p>[연결브릿지외부계단]</p>  <p>[공연장실내계단]</p>  <p>[멀티스튜디오]</p> |
| | 2.3.2 철면 및 디딤판 | | |
| | | <p>1. 무대 뒷면 휠체어리프트 측면 계단의 철면 높이가 200mm 이상으로 설치됨, 높이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p> <p>2. 공연장 2층의 계단은 디딤구간 280mm이상으로 설치하여 기준에 맞도록 할 것</p> |   |
| | 2.3.3 바닥마감 | | |
| | 2.3.4 손잡이 | <p>1. 모든 계단의 미설치된 손잡이의 시작과 끝지점의 수평 부분에는 점자표지를 부착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내의 지상3층 부분의 실내계단의 계단손잡이에 부착한 점자표지판은 현재의 수직방향에서, 점자표지가 약 15도 정도 비스듬히 설치하기 바랍니다. - 현재, 반대편 손잡이에는 점자표지가 미부착되어 있음 <p>2. 1,2층 진입계단 연결부분의 손잡이는 연결하여 설치할 것</p> <p>3. 공연장 계단의 경우 한쪽 손잡이만 설치됨, 예비인증 시 내용 확인 필요(2.3.1-3 동일)</p> |   |

| 범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 2.3.5 점형블록 | <p>1. 지상2층에서 연결되는 외부 브릿지(동측과 서측 연결 브릿지) 접근 철골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는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기 바랍니다.</p> <p>- 계단참 부분에도 계단폭만큼 점형블록 설치</p> <p>2. 멀티 스튜디오 내부 실내계단 중, 계단참 부분에 점형블록이 한 줄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계단참 유효폭이 2.0m 미만일 경우, 점형블록 삭제 바랍니다.</p> <p>3. 멀티 스튜디오 내의 실내계단의 시작지점에는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바랍니다.</p> <p>- 현재, 미설치 디딤판 시작지점의 300 이격 설치</p> |  |
| 경사로 | 2.4.1 유효폭 | | |
| | 2.4.2 기울기 | | |
| | 2.4.3 바닥 마감 | | |
| |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 |
| | 2.4.5 손잡이 | | |
| 승강기 | 2.5.1 전면활동 공간 | | |
| | 2.5.2 통과유효폭 | <p>1. 현재, 승강기의 출입문 통과유효폭, 유효바닥면적, 수평손잡이, 이용자 조작설비(가로/세로 등)의 경우, 승강기 미작동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승강기의 각 항목별 기준으로의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관련첨부자료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심의시 논의 요망</p> | |
| | 2.5.3 유효바닥 면적 | 1) 2.5.2 항목과 동일 내용 | |
| | 2.5.4 이용자 조작설비 | 1) 2.5.2 항목과 동일 내용 | |
| |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p>1. 지상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90도로 꺾여지는 출입문이 설치된 외부 승강기의 실내 음성(출입문 위치 안내 멘트)은 확인이 불가하여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시각 장애인 등이 명확히 인지가능한 음성으로 안내하기 바랍니다.</p> | |
| | 2.5.6 수평손잡이 | 1) 2.5.2 항목과 동일 내용 | |
| | 2.5.7 점자블록 | <p>1. 지상2층 외부 승강기(90도로 꺾여진 출입구 승강기)의 외부 조작버튼 전면 30cm 지점의 바닥에 점형블록 2장 설치바랍니다.</p> <p>- 현재, 미설치된 상태임</p> <p>2. 공연장내의 지상3층(메자닌층 로비) 승강기 외부조작버튼 전면의 점형블록은, 외부조작버튼 전면 30cm 지점에 설치하기 바랍니다.</p> <p>- 현재, 승강기 출입문과 외부조작버튼 사이의 기계설비공간으로 인하여 이격된 상태임</p> <p>- 외부조작버튼 전면지점으로 바닥점형블록 추가설치 요망</p> <p>3. 지상1층 외부승강기(상업업무시설 B(B101) 주출입구(방풍실B(B102)) 전면)의 외부조작버튼 전면 30CM 지점의 바닥에는 점형블록을 2장 설치바랍니다.</p> |   |
| 3. 위생시설 |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 법 | <p>1. 멀티 스튜디오 내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현재,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별로 남자용/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바랍니다.</p> <p>- 남녀공용의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 금지</p> | |
| | 3.1.2 안내표지판 | <p>1. 남녀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측면에 설치한 남녀구분점자안내표지판은 출입문(자동문) 외부조작버튼의 상부지점(높이 1.5m)으로 위치변경바랍니다.</p> <p>-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점자안내표지판과 외부조작버튼의 위치는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 요망</p> <p>- 공연장 내 여자 장애인화장실 조작버튼과 남녀구분점</p> | |

| 범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 | <p>자안내 표지판 등</p> <p>2. 공연장내의 지상2층 일반화장실(남/녀)의 남녀구분 점자안내표지판 전면 30cm 지점의 바닥에는 점형블록을 2장 설치바랍니다.</p> <p>3. 공연장내의 지상2층 일반화장실(남자)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화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녀 구분점자안내표지판에 장애인 접근성 표지 추가바랍니다.</p> <p>4. 접근로 및 복도측에서 매립된 형태의 화장실의 경우, 달대형(돌출형)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을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하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3층 상업업무시설A(A301) 측면의 화장실 등 <p>5. 지상3층 상업업무시설A(A301) 측면의 화장실 출입문의 바닥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제거하여, 측지도식 화장실 평면도(내부의 모든화장실 표현, 현재 위치 표현)를 출입문 외부의 손잡이측 벽면(바닥에서 1.5M 높이)에 설치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지도식 화장실 평면도 전면의 30CM 지점의 바닥에 점형블록 2장 설치 <p>6. 화장실 안내를 위한 출입문 측면의 측지도식 화장실 평면도에서 '현위치' 수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실제 화장실 평면에 대응하여 측지도식 평면도의 화장실 '현위치'를 수정하거나, 화장실 측지도식 평면도의 현 위치에 맞춰 측지도식 평면도의 위치를 변경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1층 여자화장실 A106(업무시설1 A107 측면) <p>7. 지상1층 중정측의 외부화장실(장애인화장실C1/C2 – C1113/C114 등) 주출입문의 실내측에도 출입문 폭만큼 바닥점형블록을 설치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대형(돌출형) 안내표지판 부착 | |
| 3.2 화장실의 평면도 | 3.2.1 유효폭 및 단차 | 1. 지상3층 상업업무시설A(A301) 측면의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이 800 미달됩니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유효폭으로 확보바랍니다. | |
| | 3.2.2 바닥마감 | | |
| | 3.2.3 출입구(문) | 1. 모든 화장실 출입문의 외 내부 손잡이를 설치할 것 | |
| 3.3 대변기 | 3.3.1 칸막이 출입문 | | |
| | 3.3.2 활동공간 | | |
| | 3.3.3 형태 | | |
| | 3.3.4 손잡이 | | |
| | 3.3.5 기타설비 | | |
| 3.4 소변기 |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1. 남자화장실내의 일부 소변기의 경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형태의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1.15m(1.1~1.2m) 정도에 위치하도록 설치바랍니다. - 현재, 1,000으로 설치 | |
| 3.5 세면대 | 3.5.1 형태 | 1. 일반화장실내의 세면대는 카운터 형으로 설치하거나, 세면대 양측에 인증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 손잡이 상단은 세면대 상단의 높이와 동일하도록 설치 할 것 | |

| 범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 3.5.2 거울 | -차갑지 않는 항목으로 내용 확인 하여 조치 할 것 | |
| | 3.5.3 수도꼭지 | 1. 모든 세면대의 수도꼭지에는 냉온수 점자표지를 부착 바랍니다. - 현재, 일반화장실내의 세면대의 수도꼭지 중에서 냉온수 점자표지 미부착 세면대가 있습니다. 냉온수 점자표지 부착바랍니다. | |
| 3.6 욕실 | 3.6.1 구조 및 마감 | | |
| | 3.6.2 기타설비 | | |
| 3.7 샤워실 및 말의실 | 3.7.1 구조 및 마감 | | |
| | 3.7.2 기타설비 | | |
| 4. 안내시설 | 4.1 안내설비 | <p>1. 지상1층 노들계단(한강대교측 대로변을 향한 외부계단)에서 접근하자마자 설치된 촉지도식 안내판(남녀화장실-T124/T125 측)의 전면 30CM 지점에는 바닥 점형블록을 2장 설치바랍니다.</p> <p>- 기존의 측면 벽(원래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위치)의 바닥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삭제</p> <p>2. 1,2층 상업시설 출입구 측면에는 점자를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판 전면에 점자블록(2매) 설치, 출입구 전면의 줄무늬 바닥 마감재는 모두 제거 (위 항목 내용 참조)</p> <p>3. 현재 시설물 내외부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업무, 상업시설의 안내판 설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안내판 설치 계획, 형태 및 설치위치에 대한 전반적 내용 확인 필요 - 관련내용 제시</p> | |
| | 4.1.2 점자블록 | 1. 예비인증의 내용에 따라 1층 종합안내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리실로 연락할 것을 명기하고 관리실 위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판 전면의 점자블록은 공연장으로 안내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종합안내판에 점자블록은 공연장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표시할 것) 관리사무소의 거리가 멀어 안내 또는 도움밸의 기능이 추가되어야한다고 판단됨 심의에서 내용 논의 할 것 | |
| |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 |
| |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 |
| 4.2 경보및피난설비 |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 | |
| 5. 기타시설 | 5.1 객실 및 침실 | 5.1.1 설치율 | |
| | | 5.1.2 설치위치 | |
| | | 5.1.3 통과유효폭 | |
| | | 5.1.4 활동공간 | |
| | | 5.1.5 침대구조 | |
| | | 5.1.6 객실바닥 | |
| | | 5.1.7 유효폭 및 단차 | |
| | | 5.1.8 유효 바닥면 | |
| | | 5.1.9 손잡이 | |
| | | 5.1.10 점자표지판 | |
| | | 5.1.11 설치높이 | |
| | | 5.1.12 초인등 | |

| 범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관 람 석 및 열 람 석 | 5.2.1 설치율 | | |
| | 5.2.2 설치위치 | | |
| |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p>1. 공연장 내부 관람석은 등받이가 있는 형태의 좌석 설치여부를 제시바랍니다.</p> <p>① 등받이 설치되는 좌석의 경우 : 30cm 정도의 난간을 전면에 설치하며, 장애인 접근성 표지는 앞 좌석의 등받이 측에 부착</p> <p>② 현재처럼 등받이 있는 좌석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높이 1.0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바람</p> <p>2. 공연장 내부의 객석 사이의 계단은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딤판 너비 : 280 이상, 철면 높이 : 180 이하로 설치 - 현재, 디딤판 너비가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임 <p>3. 공연장 무대 접근을 위한 계단은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설치 - 디딤판 너비 및 철면 높이 등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 |
| | 5.2.4 열람석의 구조 | | |
| 전 수 대 및 안 내 데 스크 | 5.3.1 설치위치 | | |
| | 5.3.2 설치 높이 및 하부 공간 | <p>1. 추후, 멀티스튜디오 및 공연장 등에 설치되는 접수대, 또는 안내데스크의 기준 적합여부는 심의시에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설치된 상태임 - 추후의 설치여부 제시 바람 | |
|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 | |
| |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 |
| |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 |
| 피 난 구 설 치 |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 |
| | 5.5.2 피난의 구조 | | |
| 임 산 부 휴 게 시 설 |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 |
| | 5.6.2 내부 구조 | | |
| 6. 기타 설 비 |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 | |

| 범 주 | 평가항목 | 심사단 의견 | 비고 |
|------------------|------|---|----|
| 기 타 의 견 | | <p>1. 노들섬 특화공간의 경우, 멀티 스튜디오 내의 장애인 화장실의 층별 분리 설치, 휠체어이용자/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자의 대지 외부에서의 접근경로, 지상3층 근생층 장애인화장실 접근을 위한 외부출입문의 유효폭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하신 '최우수'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의 조정에 대하여 심의 시에 논의하거나, 발주처 자체적으로 논의를 요합니다.</p> | |